

2024 「아트페어 육성지원」 사업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, 국제적 역량 향상을 위해 2024년 「아트페어 육성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구분	내 용								
공모명	「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」 참여단체 공모								
신청기간	2024. 1. 26.(금) ~ 2. 14.(수) 17:00까지								
신청자격	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아트페어를 2024년 국내에서 기획·개최·운영하는 민간 단체(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)								
신청자격 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기획재정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정체성·차별성 확보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의 운영과 아트페어의 홍보·마케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* 아트페어 개최 기간 내에 행사장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								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건 내외 - 단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- 단, 해외 갤러리 참여 비중이 20% 이상인 국제 아트페어는 건당 최대 150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(최대 2건) * 상기 공모유형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								
지원 세부항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지원내용 예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경쟁력 강화 프로그램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 - 특별전 및 미술기관 협력 프로그램 등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그램 - 토크, 도슨트, VIP 초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작품 판매 및 모객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</td> </tr> <tr> <td>홍보·마케팅 프로그램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 홍보·마케팅 활동비 지원 - 온라인 뷰잉룸 제작, 유튜브 송출, 언론 홍보 기획 등 </td> </tr> <tr> <td>국제화 프로그램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 미술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- 해외 미술시장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·세미나 - 한국 미술 및 작가의 해외 프로모션을 위한 한국 미술 특별 전시 - 해외 초청인사 VIP 프로그램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아트페어 개최 기간 내에 행사장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※ 공공지원 목적에 맞는 내용에 한하여 지원 예정이며 필요 시 공모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 ※ 지원사업 선정 시 관련 정산을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는 센터에서 지원 예정</p>	구분	지원내용 예시	경쟁력 강화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 - 특별전 및 미술기관 협력 프로그램 등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그램 - 토크, 도슨트, VIP 초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작품 판매 및 모객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	홍보·마케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 홍보·마케팅 활동비 지원 - 온라인 뷰잉룸 제작, 유튜브 송출, 언론 홍보 기획 등 	국제화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 미술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- 해외 미술시장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·세미나 - 한국 미술 및 작가의 해외 프로모션을 위한 한국 미술 특별 전시 - 해외 초청인사 VIP 프로그램
구분	지원내용 예시								
경쟁력 강화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 - 특별전 및 미술기관 협력 프로그램 등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그램 - 토크, 도슨트, VIP 초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작품 판매 및 모객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								
홍보·마케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트페어 홍보·마케팅 활동비 지원 - 온라인 뷰잉룸 제작, 유튜브 송출, 언론 홍보 기획 등 								
국제화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 미술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- 해외 미술시장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·세미나 - 한국 미술 및 작가의 해외 프로모션을 위한 한국 미술 특별 전시 - 해외 초청인사 VIP 프로그램 								
지원기간	2024. 3. 10. ~ 12. 10.								

□ 지원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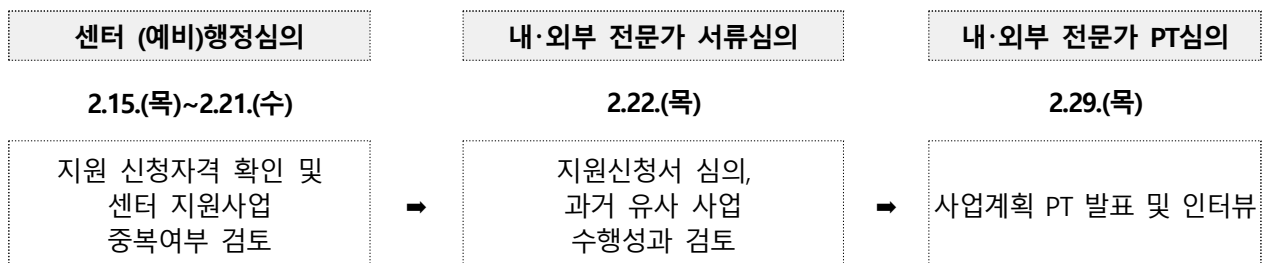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1.26.(금) ~ 2. 14.(수) 17:00
 - ※ 접수기간 내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신청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
 - ※ 제출서류 누락 시 심의에서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지원자(단체)에 있음
- 제출서류 및 방법 : 전자파일 형태로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
 - ※ 아래 표 참고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

단계	구분	제출서류
서류 심의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	•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작성
	e나라도움 파일 첨부	•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 *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→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• 사업자등록증(JPG 또는 PDF 파일) 1부 • 과거 아트페어 운영 및 실적 증명 자료
PT 심의	PT 자료	• 서류심의 이후 PT심의 대상 단체에 한하여 이메일을 통한 제출

- ※ 'e나라도움' 내 공모신청 경로
(상단 메뉴)공모사업찾기>공모사업검색>공모명 검색 : 「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」 참여단체 공모>검색된 목록 클릭>공모신청 바로가기 클릭
- ※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, 공인인증서 필요
- ※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개인회원 가입 불가
- ※ 본 지원 사업은 '예치형'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
- 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- 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-9595

□ 심의개요

- 심의방법 : 내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PT심의
- 심의절차



*상기 심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

○ 심의기준

심의지표			
심의지표	가중치	세부지표	
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, 구성, 성과 등 공모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○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	
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의 안정성 ○ 프로그램 내·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 ○ 아트페어의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사업의 연속 가능성 	
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	프로그램 기획력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계획의 적절성·합리성·구체성 ○ 기획의 차별성·참신성 ○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
	재원 활용 계획의 적절성	1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○ 재원조성 계획의 수립 정도 및 현실가능성
기대효과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계획이 해당 아트페어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○ 국내 미술시장에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정도 ○ 사업 효과의 공공성 	

* 심의 시 우대사항 : 2023년도 아트페어 평가 우수단체

○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

□ 주요사항

지원 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•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 • 부대비비용 :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•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: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 • 기타 사항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• 아트페어 전체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료·가벽 설치비용 지원 불가
지원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•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•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 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
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나라도움 교육 보조사업자 집행과정 2시간 및 정산과정 2시간 이수, 수료증 제출 • 아트페어 방문객 설문조사 진행 협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센터가 별도 용역을 운영하며, 지원단체에서 별도 예산 책정 불필요 - 선정단체는 개최 기간 중 실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스 제공 등 적극 협조 필수

<p>선정 단체</p> <p>의무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아트페어 별 구매자 특성 및 페어별 티켓 소비자 분석, 만족도 정보 개별 제공 예정 • 사업평가 협조 및 전체 아트페어에 대한 성과(판매액, 관람객 수 등) 및 요청 정보 제출 • 「2024 미술시장조사」 응답 필수 •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·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•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 •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'불공정행위'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"> <p>* '문화예술용역'이란?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(사업운영인력 전원) •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"> <p>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*** 사업기간 종료일은 아트페어 현장운영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로 제한됨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•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•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
---	--

□ 유의사항

-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*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
-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○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- 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- 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
○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
- *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
- 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 내에서만 가능
- *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

○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

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
-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
○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누리장터) 이용 필수

○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
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
○ 공모요강,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, 사업운영 가이드,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

○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
□ 관련문의

- 사업 관련 문의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
 - (유선) 02-708-2254, (이메일) lhmffj@gokams.or.kr
 - ※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 월-금,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- e나라도움 이용문의 : e나라도움 고객센터
 - (유선) 1670-9595